

아래의 내용중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것이
첨가, 삭제 혹은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조항 번호는 차후에 수정합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규약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Emmanuel Presbyterian Church of San Jose)라 칭한다.

제 2 조 신조: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 소요리문답을 신앙지침으로 받아들이며, 교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등은 본 교회가 속하는 상회의 법에 따르면서, 아래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으로 믿고 우리의 신조로 삼는다.

1. 우리는 신,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영광과 권능에 있어 동등되심을 믿는다.
3. 우리는 우리 시조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Savior)와 주(Lord)로 주셨음을 믿는다.
4.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짐을 믿는다.
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을 믿으며, 그의 교회의 사역목표는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는다.
6. 우리는 복음전파 및 모든 교회의 사역에 있어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이며 육체적인 죽임과 부활을 믿는다.
7.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sacraments)인 세례(baptism)와 성찬(holy communion)을 신실하게 시행한다.
9. 우리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령한 연합으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8.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며, 항상 기도하며, 성례에 참여하며,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모든 신자의 본분임을 믿는다.
9. 우리는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린다.
10. 우리는 끝 날에 모든 자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죄악 속에서 계속 살아간 자들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제 2 장 교회의 직원

제 3 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감독)(행 20:17,28, 딤후 3:1-7)와 집사이며,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전담하는 장로로 구분한다.

제 4 조 교회의 임시직: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당회의 허락하에 임시직원을 다음과 같이 안수 없이 세운다.

- (1) 전도사: 당회와 목사의 지도 하에 지교회 목회를 돕도록 한다.
- (2) 권사: 여신도 중 만 45 세 이상 된 ~~임교인~~ **정회원**으로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을 심방하며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한다.
- (3) 서리집사: ~~신실한 교우~~ **정회원** 중 임시로 집사직을 맡겨 교회를 봉사토록 할 수 있다.

제 5 조 임시직원 선출방법 및 임기

- (1) 전도사: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임기는 1 년이고, 당회의 결의로 재임할 수 있다.
- (2) 권사: 제 10 조에 의하여 선출하며, 안수 받지 않는 임시직이되 권징을 받지 않는 한 중신토록 봉직한다.
- (3) 서리집사: 당회의 추천과 본인의 승낙으로 임직하며, 임기는 1 년이다.

제 3 장 직원의 자격

제 6 조 목사

- (1) 자격: 딤후 3:1-7, 딤후 1:5-9, 뱀전 5:1-4 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 받은 후,
 - 가) 본 교회(소속된 교단) 헌장, 규약을 승인하며,
 - 나) 신앙과 행실이 진실하며,
 - 다) 매사에 경건함과 사랑으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 라) 불신자에게서라도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로서,

- 마) 만 27 세 이상의 남자로 모신다.
- (2) 구분
 - 가) 위임목사: 본 교회에서 청빙받고 위임을 받은 종신직 담임목사
 - 나) 임시목사: 본 교회의 청빙을 받아 1년간 시무하는 목사로서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 다) 부목사: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매년마다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장로

- (1) 자격
 - 가) 딤편 3:1-7 에 해당하는 **세례교인정회원**으로서,
 - 나) 본 교회의 신조, 헌장, 규약 등을 승인하며,
 - 다) 남자 교우 중 만 45 세 이상 된 자로서,
 - 라) 세례 후 만 5년 이상 흠 없이 교회를 봉사하고,
 - 마) 본 교회에 등록된 지 만 5년이 경과하고,
 - 바)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 자로서,
 - 사) 불신자에게서라도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한다.
- (2) 협동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된 후 만 2년이 경과한 장로로서 당회의 결의로 임직된다. 협동장로 임직 후 만 1년이 경과하면 공동의회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장로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제 8 조 집사

- (1) 자격
 - 가) 딤편 3:8-13 에 해당되는 **세례교인정회원**으로
 - 나) 본 교회 신조, 규약을 승인하며,
 - 다) 남자 교우 중 만 35 세 이상 된 자로서,
 - 라) 세례 후 만 3년 이상을 흠 없이 교회를 봉사하고,
 - 마) 본 교회에 등록된 지 만 3년이 경과하고,
 - 바) 구원의 체험이 확고한 자로서,
 - 사) 불신자에게서라도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한다.
 - 아) 협동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후 만 2년이 경과한 집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임직된다.
- (2)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직하여 안수집사의 직무를 분담케 할 수 있다.

제 9 조 권사

권사직은 한번 임직된 후 직분이 평생 유임된다는 뜻에서는 종신직이다. 그러나, 다른 종신직처럼 안수로 임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임시직이다. 자격은 본 교회 등록 후 만 3년 이상 교회를 봉사한 여 **교우정회원** 중 만 45 세 이상 된 자로서, 신앙이 진실하고, 구원의 체험이 확고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고, 불신자에게서라도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한다. 협동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후 만 2년이 경과한 권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임직된다.

제 4 장 직원 선거 및 임기

제 10 조 항존직의 선출방법 및 임기

- (1) 목사: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사임 시에는 본 교회로부터 20마일 이내에서 3년 안에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거나 개척하지 않는다.
- (2) 장로, 집사, 권사: 당회는 최소한 6개월 전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의 시간과 장소를 공고한다. 제 7,8,9 조에 각각 적합한 자 중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 (3) 투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를 1회 실시한다.

제 5 장 치리회

제 11 조 당회

- (1) 조직: 장로교회의 세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중의 하나로서, 위임 목사와 시무 장로로 구성된다.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면 성수가 된다.
당회의 결의에 따라 영어 목회자, 임시목사, 협동장로 등이 방청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2) 회집: 매월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목사의 요청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공동의회

- (1) 회원: 본 교회에 등록된 후 흠이 없이 1개월 이상 출석한 ~~세례교인~~ 정회원이 회원이 된다.
- (2) 회집
 - 가) 정기 공동의회: 매년 1월 중에 모인다.
 - 나) 임시 공동의회: 당회가 요청할 시,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시, 당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 (3) 의장, 서기:
지교회 당회장이 의장이 되며, 당회장이 없을 시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노회가 파송한 임시 의장이나 당회원 중에서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하며, 회록은 별도 작성하여 서기가 보관한다.
- (4) 성회: 당회는 공동의회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최소한 2주 전에 공고 혹은 통지하고, 당일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한다.

- (5) 결의: 목사 청빙의 건, 장로 집사 권사 선출의 건 등 특수 안건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그 외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3 조 제직회

- (1) 조직: 지교회 당회원,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된다. 회장은 당회장이 된다. 당회의 결의로 서기를 선정하고, 부서를 둘 수 있다.
- (2) 사역: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제반 사역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 (3) 회집: 2개월에 한번 소집한다. 당회의 결의나, 제직회원 3분의 1의 청원이 있을 시에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 6 장 교회 재산

제 14 조 본 교회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 동산, 개인이나 단체가 현금 혹은 헌납한 모든 것을 총칭한다.

제 15 조 본 교회의 재산은 당회가 관장하며, 필요 시에는 이사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 운영케 할 수 있다.

제 7 장 소속 자치기관

제 16 조 본 교회에서 조직한 모든 자치기관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목적을 갖고 활동하되, 본 교회의 신앙신조,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8 장 회원

제 17 조 회원요건

- (1) 등록교인은 본 교회 소정의 등록과정을 완료한 자로 한다.
- (2) 정회원은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규약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본 교회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을 출석한 자로 한다.

제 18 조 회원권리

- (1) 등록교인은 본 교회의 각종 예배와 친교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본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례인 세례식 및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교회의 직분자 선출시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으며, 본 교회의 목사에게 결혼 주례를 신청하여 본 교회의 신조규약에 부합한 결혼이라고 판단될 경우 주례를 받을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 17 조 본 규약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수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제 18 조 본 교회가 소속한 상회에서 탈퇴하기를 원할 시에는 이 문제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출석교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탈퇴 후에도 본 교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은 계속 본 교회의 소유로 남는다.

제 19 조 본 규약은 1999년 1월 10일 공동의회에서 통과됨으로 발효되었고, 2005년 1월 11일 공동의회에서 부분 수정되었다.